

#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 12. 3.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1.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1.11.29.)

상정, 심사, 보류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2021.12.3.)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2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출연대상: (재)마포문화재단

2) 출연 필요성

-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시설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 마포지역 문화 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3)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

-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 2022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해 출연 금액 결정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재)마포문화재단은 창조적 문화역량을 바탕으로 마포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으로 구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제출된 출연금을 보면 2021년 대비 10.22%(7억 3천5백만 원) 증가한 79억 3천4백만 원으로 편성됨.
- 동 출연계획은 근거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출연 목적에도 합당하므로 출연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연도별 출연 현황을 보면 매해 년도 출연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수입 부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적자경영의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동 문화재단이 수익성을 우선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은 아닐 것이나 자체수입 부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2022년도 출연 증액 사유 중 인건비 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4억 1,291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 역시 증편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할 것임.

※ (재)마포문화재단 연도별 출연 현황

회계연도	총예산	자체수입	출연금	비고
2017	8,858,720	4,744,520	4,114,200	본예산 기준
2018	8,936,848	4,533,395	4,403,453	
2019	9,770,852	4,388,515	5,382,337	
2020	10,187,317	3,766,232	6,421,085	
2021	10,479,618	3,280,933	7,198,685	

※ (재) 마포문화재단 연도별 경영평가 현황

구분	연도별	평가결과	비고
기관 평가	2021년도(2020년 실적)	“나”등급(88.97)	
	2020년도(2019년 실적)	“나”등급(89.46)	
	2019년도(2018년 실적)	“가”등급(90.78)	
기관장 평가	2021년도(2020년 실적)	“나”등급(88.93)	
	2020년도(2019년 실적)	“나”등급(89.65)	
	2019년도(2018년 실적)	“가”등급(91.62)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